

현 행	개 정
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(생 략) ② 사유재산 피해신고 화면에서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88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및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에 따라 자연재해 사유재산피해 신고, 재난지원금 지급, 의연금 배분 및 간접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.	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(생 략) ② 사유재산 피해신고 화면에서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88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및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에 따라 자연재해 사유재산피해 신고, 재난지원금 지급, 의연금 배분 및 간접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.
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~②(생 략) ③ 1. 사유재산피해신고 - 날짜 또는 주기 : 복구계획 확정 시 - 법적 근거 :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2조,(별지 서식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51조 - 목적 : 간접지원 및 의연금 지급 - 항목 : 성명, 주소, 가족수, 계좌번호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 - 보유 및 이용기간 : 30년 - 이용 또는 제공받는 자 : 중앙행정기관, 중소기업진흥공단, 기술신용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, 농업협동조합, 축산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, 전기통신사업자, 한국전력공사, 가스도매업자·일반도시가스사업자, 그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(지자체상하수도부서·농업부서 등)	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 1. 사유재산피해신고 - 날짜 또는 주기 : 복구계획 확정 시 - 법적 근거 :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2조,(별지 서식1) - 목적 : 간접지원 및 의연금 지급 - 항목 : 성명, 주소, 가족수, 계좌번호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주민등록번호, 고등학생수, 피해장소 - 보유 및 이용기간 : 30년 - 이용 또는 제공받는 자 : 중앙행정기관, 중소기업진흥공단,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, 농업협동조합, 축산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, 전기통신사업자, 한국전력공사, 가스도매사업자·일반도시가스사업자, 그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(지자체상하수도부서·농업부서 등)
 제7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(생 략)	 제7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(생 략)

현 행	개 정
· 2026. 01. 07. ~ 2026. 02. 11. 적용지침 클릭	· 2026. 02. 12. ~ 2026. 04. 01. 적용지침 클릭
· 2025. 11. 06. ~ 2026. 01. 06. 적용지침 클릭	· 2026. 01. 07. ~ 2026. 02. 11. 적용지침 클릭
· 2024. 6. 12. ~ 2025. 11. 05. 적용지침 클릭	· 2025. 11. 06. ~ 2026. 01. 06. 적용지침 클릭
· 2024. 8. 1. ~ 2025. 6. 11. 적용지침 클릭	· 2024. 6. 12. ~ 2025. 11. 05. 적용지침 클릭
.....	· 2024. 8. 1. ~ 2025. 6. 11. 적용지침 클릭
	